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8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채현일 · 이해식 · 양부남
허종식 · 조계원 · 이상식
차지호 · 노종면 · 김문수
김준환 · 김남근 · 강득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을 통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요구·청탁도 금지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24조의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신설한다.

제24조의2(친족 등 관련 사건의 신고 및 부당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수사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관여 제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 금지, 수사정보 접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4조의2(친족 등 관련 사건의 신고 및 부당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 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수사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관여 제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 금지, 수사정보 접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